

의안번호	2217628
의 퇴 인	김용만의원
회 답 일	2026.8.27.
추계번호	26D1552
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3억 6,400만원, 2030년 51억 7,6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205억 2,900만원(연평균 51억 3,2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안 제9조(위원회의 활동기간)	5,364	4,935	5,054	5,176	20,529	5,13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(위원회의 활동기간)	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함(제1항) 위원회는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활동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규정/재량 규정
2	안 제27조(포상금의 지급)	국가는 친일재산을 적발하여 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재산 조사에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그 친일 재산을 매각하거나 환수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9조(위원회의 활동기간)	○	
2	안 제27조(포상금의 지급)	×	미첨부3호: 위원회의 활동에 의한 친일재산 환수 규모 및 포상금의 지급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행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 및 사무처는 2006년 설치되어 2010년까지 4년간 활동하고 해산되었으며, 이후 관련 소송 및 법적 대응 업무를 법무부가 승계하여 수행하고 있음
- 현행법은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최대 4년으로 규정하고 이후 해산하도록 하고 있으며,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
 - 개정안은 과거 2005년에 제정·공포되었던 「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(법률 제7769호, 2005.12.29.)」에 대한 전부개정 법률안이며, 과거 위원회의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활동내역

구분	내용
위원회 활동기간	2006. 7. 13. ~ 2010. 10. 12.
위원회 활동경과	- 「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·공포(2005.12.29.) -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 준비단 구성(2006.02.13.) -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발족(2006.07.13.) -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식 조사활동 종료(2010.07.12.) -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해산(2010.10.12.)
위원회 구성	위원장 1인(장관급), 상임위원 2인(차관급), 비상임위원 6인 위원회 직원은 총 107명으로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아 53명을 충원하고, 자체적으로 54명을 충원하여 구성
사무처	2단 7과 1법무담당관 1조사연구관
활동결과	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 소유의 1,139만㎡에 달하는 토지를 국고로 환수(당시 공시지가 959억원, 시가 2,106억원)

자료: 법무부 및 위원회의 결산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개정안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고,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며,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활동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- 개정안이 위원회 및 사무처를 재설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활동을 재개하도록 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및 사무처 인건비는 2026년 기준 법무부 직급별 보수를 참고하여 추계함
 - 과거 위원회 직원은 총 107명으로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아 53명을 충원하고, 자체적으로 54명을 충원하여 구성하였으므로, 위원회 정원 중 54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직급별 정원은 과거 위원회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

[표 3]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급별 보수(자체충원 인원에 한함): 2026년
(단위: 천원)

직급	봉급	정근수당	성과 상여금	정액 급식비	명절 휴가비	직급 보조비	직급별 보수
장관급	155,634	-	-	1,680	-	14,880	16,560
차관급	151,149	-	-	1,680	-	11,400	13,080
고위 공무원단	151,560	-	-	1,680	-		1,680
3·4급	125,388	-	-	1,680	-	6,000	7,680
4·5급	119,852	-	-	1,680	-	4,800	6,480
6급	53,166	4,165	4,500	1,680	5,317	2,220	17,882
7급	52,071	4,079	3,826	1,680	5,207	2,160	16,952
계약직	34,583	-	-	-	-	-	34,583
상근직	43,274	-	-	-	-	-	43,274

자료: 법무부 2026년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4]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급별 정원 및 보수(자체충원 인원에 한함): 2026년
(단위: 명, 천원)

구분	직급		정원	직급별 보수	보수
정원	위원	장관급	1	16,560	16,560
		차관급	2	13,080	26,160
	직원	고위공무원단	1	1,680	1,680
		3·4급	4	7,680	30,720
		4·5급	3	6,480	19,440
		6급	14	17,882	250,348
		7급	1	16,952	16,952
정원 외		계약직	4	34,583	138,332
		상근직	24	43,274	1,038,576
합계			54	－	1,538,76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및 사무처 운영비는 과거 위원회가 2006년 설치되어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점을 고려하여, 2009년 기준 위원회 및 사무처의 운영비를 참고하여 추계함

[표 5]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비 내역: 2009년

(단위: 천원)

비목	예산
일반수용비	540,651
공공요금 및 제세	82,117
특근매식비	43,800
임차료	1,307,026
시설장비유지비	39,326
차량선택비	24,000
복리후생비	27,720
위탁사업비	6,000
기타운영비	22,380
합계	2,093,020

자료: 법무부

- 개정안에 따라 활동이 재개되는 위원회 및 사무처는 과거 활동했던 위원회 및 사무처와 동일한 인력 규모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공무원임금상승률을 적용하되, 2025년까지는 실측치를 적용하고, 2026년부터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

- 개정안에 따른 인건비는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 임금 상승률, 기관부담금 요율 및 자산취득비¹⁾를 적용하여 추계함
- 안 제9조에서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년으로 가정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인건비

- 개정안에 따른 인건비는 위원회·사무처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보수와 기관부담금으로 나뉨
 - 공무원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한 2027~2030년의 보수는 다음의 표와 같음

[표 6] 위원회·사무처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보수: 2027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합계
보수	1,585	1,633	1,682	1,732	6,63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기관부담금 요율을 적용한 기관부담금은 다음의 표와 같음

1) 기관부담금 요율, 자산취득비 단가(2026.7. 기준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소비자물가 상승률(CPI, %)	2.3	2.0	2.0	2.0	2.0	2.0	2.0
공무원 임금상승률(%)	3.5	3.0	3.0	3.0	3.0	3.0	3.0
기관부담금 요율(%)	13.067	13.129	13.193	13.285	13.380	13.475	13.559
자산취득비 단가(천원)	4,981	5,080	5,182	5,285	5,391	5,499	5,60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7] 위원회·사무처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기관부담금: 2027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합계
보수(A)	1,585	1,633	1,682	1,732	—
기관부담금 요율(B)	13.129%	13.193%	13.285%	13.380%	—
기관부담금 (C=A×B)	208	215	223	232	87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보수와 기관부담금을 합한 인건비는 다음과 같음

[표 8] 위원회·사무처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: 2027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합계
보수	1,585	1,633	1,682	1,732	—
기관부담금	208	215	223	232	—
합계	1,793	1,848	1,905	1,964	7,5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운영비

- 운영비는 과거에 활동하였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2009년 기준 운영비(20억 9,300만원)에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정

[표 9] 위원회·사무처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: 2027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합계
운영비	3,027	3,087	3,149	3,212	12,47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자산취득비

- 자산취득비는 2027년 1회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하며,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자산취득비 단가를 적용하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 107명의 자산취득비는 다음과 같음

[표 10] 위원회·사무처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: 2027~2030년

구분	2027	2028	2029	2030
위원회 및 사무처 정원(명)	107	107	107	107
자산취득비 단가(천원)	5,080	—	—	—
자산취득비(백만원)	544	—	—	—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라.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3억 6,400만원, 2030년 51억 7,6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205억 2,900만원(연평균 51억 3,2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1] 위원회 설치 및 활동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: 2027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인건비	1,793	1,848	1,905	1,964	—	—
운영비	3,027	3,087	3,149	3,212	—	—
자산취득비	544	—	—	—	—	—
합계	5,364	4,935	5,054	5,176	20,529	5,13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nabo.go.kr